2015. 06. 13 9급 서울시 지방직 행정법총론

김용철 교수
윌비스고시학원
www.yongcheolsam.com

<총평>

국가직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법시험에 비추어 보면 그리 어렵다고도 할 수 없는 보통수준의 난이도였다. 한 문항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의 기출문제를 충실히 소화해 낸 수험생이라면 능히 고득점이 가능했으리라 보여진다.

이번 서울시 문제의 특이점은 판례의 비중이 좀 줄고(물론 그래도 판례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기본적인 이론과 논리를 묻는 문항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문제의 구성을 보면 판례에서 7문항 정도, 법조문을 묻는 문항수는 2~3문항 정도였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논리와 이론을 묻는 문항이었다.

단원별로 살펴보면, 행정구제편에서 7문항(행정절차법 2문항, 국가배상 2문항,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3문항), 행정행위편에서 5문항, 의무이행확보수단편에서 3문항, 행정법 통칙편에서 3문항 정도였다. 특이점으로는 기존의 행정법 시험(9급 기준)과 달리 행정절차단원과 국가배상단원에서 2문항씩을 출제되었고(종래의 경우 한 문항 정도였다) 손실보상단원에서는 전혀 출제가 없었다(참고로 국가직 시험에서도 손실보상단원은 출제되지 않았다).

난이도는 상에 해당되는 문항이 한 문항 정도였고, 나머지는 중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이론과 기존의 기출문제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1.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②「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③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④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① 이미 과거에 완성된(종료된)사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다(진정소급적용금지)할 것이나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경우나 중대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진정소급은 허용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은 그 시행전의 토지양도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은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계속된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은 무방한 것이고, 또 양도소득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이미 발생하고 있고 다만 그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단축하였다 하여 새로운 과세의무를 소급적으로 과하는 것이거나 양도인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소급적용규정으로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4.05.22. 선고 80누586)'
③ 건설부장관은 동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2.12.28. 선고 82누1)

2.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5. 9급 서울시)

ㄱ.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ㄷ.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ㅁ.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ㅂ. 환매권의 행사
ㅅ.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① ㄱ, ㄴ, ㄷ, ㅂ　　② ㄱ, ㄷ, ㅁ, ㅂ
③ ㄴ, ㄷ, ㅁ, ㅅ　　④ ㄴ, ㅁ, ㅂ, ㅅ

정답 ④ ㄱ.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대판87누1046)
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한다.(대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ㄷ.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무관계라 보기 어렵다.(대판 1993.7.13. 선고 92다47564)
ㄹ.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대판 1995.06.09. 선고 94누10870)
ㅁ.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다.(대판 2001.06.15. 선고 99두509)
ㅂ. 환매권의 행사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ㅅ.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관계이다.

3. 행정상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국민안전처장 ◘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은 부령제정권을 가진다.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③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④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① 헌법상 행정입법이 가능한 기관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등이 되며, 국무총리 소속의 처의 장은 행정입법권이 없다.

4.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ㄱ.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수 있다. ㄴ.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ㄷ.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라 한다. ㄹ.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ㅁ.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ㄴ, ㅁ　　④ ㄷ, ㄹ

정답 ④ ㄷ.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라 한다.
ㄹ. 행정행위의 집행력은 행정청의 권력적 작용으로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ㄱ.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 즉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ㄴ. 행정행위는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 · 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법적 행위이다. 따라서 행정내부의 업무지시나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ㅁ. 횡단보도는 일반처분으로서 행정행위이다.

5.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 9급 서울시)

① 무권한은 중대 ◘ 명백한 하자이므로 항상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무효선언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명백성보충요건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의 기준으로 중대성요건만을 요구하지만,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명백성요건도 요구한다.

정답 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주민등록을 빈번히 이전·말소한 경위, 세무서장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주소를 확인한 과정과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납세지 확정에 관련된 규정들에 비추어 보아, 그 하자가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대판 2001.06.01. 선고 99다1260)
/ ②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은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를 구비하지 못하면 비록 처분이 무효에 해당된다고 해도 각하된다.
③ 무효는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못한다.
④ 명백성 보충요건설에 의하면 하자의 중대성만으로도 무효에 해당하지만, 제3자의 신뢰보호나 행정청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명백성도 무효의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6.「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퇴직연금의 환수결정과 같이 법령상 확정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위반이 된다.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없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정답 ③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11.28. 선고 99두5443)
/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4항)
②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1. 4. 13. 2000두3337)

7.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③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④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답 ② 수익적 행정처분은 신뢰보호 등에 의해 철회나 직권취소가 제한된다.

8.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법률상 시설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② 공원매점에서 퇴거할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부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대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 즉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추론)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6.06.28. 선고 96누4374)'
/② 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 의무는 신체의 퇴거가 대상이라서 대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
③ 행정강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강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④ 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른 의무불이행이나 법령 자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집행이 가능하다.

9.「 국가배상법」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5. 9급 서울시)

①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②「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④ 국가배상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나, 재판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다.

정답 ②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에 의한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무과실책임원칙이다.
/ 국가의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경우 상호보증주의에 의한다. 국가배상법에 대한 성질에 대해 다수설은 공법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하나, 대법원은 사법으로 보아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하여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양자는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행정소송이 제3자 기관인 법원에 의해 심판되므로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 □판단하는 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행정조직 내에서 자기통제 기능을 겸하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은 철저한 대심주의를 관철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 방어방법에 한정하여서만 심리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변경재결과 같이 원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기각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정답 ③ 행정심판은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소송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극적 변경은 불가하고 (일부취소는 가능함 - 이를 행정소송법에서는 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처분을 취소하는 소극적 변경만이 가능하다.
/① 행정심판이나 소송 모두 불고불리원칙에 의해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심리하거나 재결· 판결을 할 수 없다. 단 심리의 경우 소장의 법위내에서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소장에 일건 현출된 사항에 대하여..)
② 행정소송도 소장의 범위 내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의 경우에도 주장한 사항을 심리하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과 소송이 동시에 청구되어 진행되는 동안, 심판에서 인용이 된다면 소송은 소익이 상실되지만, 심판에서 기각재결이 있게되면 소송은 계속진행이 된다.

1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
② 제3자의 정당한 이익까지 희생시키면서 신뢰보호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은 행정청의 적법한 선행조치, 보호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인과관계,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④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정답 ④ 확약의 실효에 대한 내용이다.
/① 신뢰보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설이다.
② 신뢰보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중대공익, 법률적합성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이를 능가하는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뢰는 보호되기 곤란한다.
③ 신뢰보호는 적법한 선행조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비록 위법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보호가치있는 신뢰의 경우 보호가 된다.

12. 다음은「 식품위생법」조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 9급 서울시)

【제79조(폐쇄조치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① 관계 공무원이 계고 등 사전조치 이후 행한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②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
③ 공무원이 적법하게 영업소의 간판을 제거하더라도 영업주에게 간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④ 위「 식품위생법」 제79조 제4항은 비례의 원칙 중에서 필요성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정답 ④"~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는 비례원칙 중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① 즉시강제는 의무부과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계고 등의 사전조치가 있었다면 이는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② 게시문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③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를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정답 ③ 부담부 행정행위는 주된 행정행위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서 주된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부관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건과 구분된다.
/① 기속은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나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법령의 해석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부관은 부종성의 성질에 의해 독립된 쟁송이 되지 못하나,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불가분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④ 재량은 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14.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해 A구의 보건행정담당 공무원甲이 관내 일반 ◘ 휴게 ◘ 계절음식점 업주에 대해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5. 9급 서울시)
①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수권(授權)없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② 위생지도의 상대방인 일반 ◘ 휴게 ◘ 계절음식점 업주가 甲의 위생지도에 불응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당해 업주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甲의 위생지도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행정절차법」 상의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④ 甲의 위생지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생지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과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정답 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조직법적 근거가 있으면 법률에 근거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② 행정지도를 불이행했음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④ 행정절차법 제51조 규정이다.

15. 다음 중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ㄱ.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이에 근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ㄴ. 신고납세방식의 취득세의 신고행위와 징수처분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ㄹ.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ㄱ.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 경우,(후략)(대판 2001.06.26. 선고 99두11592)
ㄴ.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다(대판 2006.09.08. 선고 2005두14394)
ㄷ.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하자가 승계된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ㄹ.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은 하자가 승계된다.(대판 2008. 8. 21, 2001두13845)

16.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의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중 「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2015. 9급 서울시)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정답 ② 이유부기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5. 9급 서울시)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바,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정답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관할 법원) :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1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2015. 9급 서울시)
①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직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과실의 존재도 추정된다.
③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유가 법령 해석의 잘못이었다면 그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의 과실은 당연히 인정된다.
④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다.

정답 ① 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공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으로 판단하지 않고 과실의 객관화론에 의해 당해 직무를 수행하는 평균인으로 삼는다. 따라서 위법의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이 가능해진다.

19.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2015. 9급 서울시)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보상금지급청구소송
②「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손실보상청구소송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ㅁ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송
④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결정에 대한 소송

정답 ② 대판 1992. 12. 24, 92누3335
/①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판 2008. 4. 17, 2005두16181)
③ 항고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0.02.25 선고 2007다73598)
④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1996.12.06. 선고 96누6417)"

20.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015. 9급 서울시)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다.
③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 행정심판법」 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정답 ④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1.11.13. 선고 2000두536)
/②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판 2000.06.09. 선고 98두2621)